

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20. 3. 9
 1차 개정 2020. 7. 29
 2차 개정 2022. 7. 13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「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학사과정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한다. <개정 2020.7.29.>

1. 성적 및 졸업사정 <신설 2020.7.29.>
2. 교육과정 기본방향 수립 및 개선방안, 변경에 관한 사항
3. 학사 및 교육과정 관련 주요 규정류 제·개정 및 폐지
4. 교육과정 설계(교과목 신설 및 폐지) 및 운영계획 수립
5.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
6. 교수학습방법, 교육과정 평가 및 학생평가 등에 관한 자원 분배
7. 학생평가 원칙 및 계획수립, 평가
8.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
9. 기타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
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둔다.

1. 기초의학교육 소위원회
2. 임상의학교육 소위원회
3. 임상실습교육 소위원회
4. 문항개발 소위원회
5. PBL(Problem Based Learning) 소위원회
6. 연구역량교육 소위원회
7. HSS(Health System Science) 소위원회

③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(전문개정 2022.7.13.)

제 4 조(위촉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실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의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위촉하며 학생부학장, 의학과장, 각 소위원회 위원장, 임상교육센터장, 학생대표 2인, 의과대학 교학팀 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<개정 2022.7.13.>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는 위원 중 간사 2인을 둔다.

제 5 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,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과대학장이 지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한다.

제 6 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받는다.

제 7 조(회의록 및 보고)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(보칙)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폐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「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운영규칙」, 「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운영규칙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